

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경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2064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2. 21.

발 의 자 : 김경협 · 기동민 · 김영호

김정우 · 노웅래 · 박 정

심재권 · 원혜영 · 윤관석

이철희 · 정성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07년 4월부터 시행된 「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」의 유효기간이 2019년 4월로 종료될 예정임.

현재 이 사업은 78% 정도 진척되었으나 사전편찬 완료를 위한 원고의 합의, 교정, 교열 등 작업이 남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 법의 유효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.

이에 부칙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2024년 4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(안 법률 제8392호 부칙 제2조).

법률 제 호

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8392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

제2조 중 “12년”을 “17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8392호 겨레말큰사전남북 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(유효기간) 이 법은 시행일 부터 <u>12년</u> 간 효력을 가진다.	법률 제8392호 겨레말큰사전남북 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(유효기간) ----- ----- <u>17년</u> -----.